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술인에 대한 공제사업 신설 》

■ 손명수의원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13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손명수의원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제221713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공제사업 신설(안 제70조의2 신설)	3

I. 손명수의원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제221713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손명수의원 · 김은혜의원 등 24인

나. 발 의 일 : 2026. 2. 27.

다. 회 부 일 : 2026. 3.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도로, 철도, 주거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간산업이며,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기획 · 설계 · 시공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적자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 · 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산업의 전문성 약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건설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과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복지 · 공제제도는 부재하여 직역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경력 유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

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공제사업 신설(안 제70조의2 신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인단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제사업을 각 호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2항은 공제사업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의 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안 제3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항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70조의2(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 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단체(이하 “건설기술인단체”라 한다)는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u> <u>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u> <u>2. 가입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u> <u>3. 가입자의 교육·기술인증·경력개발 등 역량개발 사업</u> <u>4.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u> <u>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u> <u>② 건설기술인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u>

현행	개정안
	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제도(共濟制度)는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 구성원 간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법률」,¹⁾ 「과학기술인공제회법」,²⁾ 「한국교직원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2. 5. 23.>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법」³⁾ 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등, 과학기술인, 교육 구성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건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제도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공제조합의 공제사업,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의 공제사업,⁵⁾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⁶⁾ 등이 있음.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

이 중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사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기자재의 구매 알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공제회⁷⁾를 설립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 운영(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등), 자금의 대부, 복지증진,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건설 분야 운영 공제제도의 사업 비교 】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사업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3. 제16조의2 ⁸⁾ 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6.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7. 건설 관련 법인에의 출연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이 공동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조합원의 정보 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건설사업자의 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사업
10.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7.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공제조합의 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그런데, 건설 관련 현장에서 기계, 전기·전자, 토목, 건축 등 10개 직무 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철도신호, 토질·지질, 건축구조 등 총 47개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인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⁹⁾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9)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에 대하여는 전체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가 운영되지는 않고 있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공제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기술인¹⁰⁾¹¹⁾이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¹²⁾¹³⁾인 경우 등에 해당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u>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u>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u>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u>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u>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u>에서 <u>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u>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u>국립·공립 시험기관</u> 또는 <u>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에 소속되어 <u>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u>한 사람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공조냉동 및 설비 2)건설기계 3)용접 4)승강기 5)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철도신호 2)건축전기설비 3)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토질·지질 2)토목구조 3)항만 및 해안 4)도로 및 공항 5)철도·삭도 6)수자원개발 7)상하수도 8)농어업토목 9)토목시공 10)토목품질관리 11)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지적
라. 건축	1)건축구조 2)건축기계설비 3)건축시공 4)실내건축 5)건축품질관리 6)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화약류관리 2)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도시계획 2)교통
사. 조경	1)조경계획 2)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건설안전 2)소방 3)가스 4)비파괴검사
자. 환경	1)대기관리 2)수질관리 3)소음진동 4)폐기물처리 5)자연환경 6)토양환경 7)해양
차. 건설지원	1)건설금융·재무 2)건설기획 3)건설마케팅 4)건설정보처리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u>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사항 중 ‘국가자격 종목’을 참고(p.14.)에 기재함.	

10) 「과학기술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법률에 따른 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제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11)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은 약 100만 7,000명 중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자격이 있는 인원은 약 4만 6,000명이고, 이 중 약 3만 5,000명이 과학기술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합계	종합건설	전문건설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ENG사업자	기술사사무소	기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025년12월 기준)	1,070,208	237,683	244,234	8,956	47,146	39,430	6,166	499,884
						(소계) 45,596		
과학기술인공제회 (2025년6월 기준)	133,164	-	-	-	-	31,604	3,469	98,091
						(소계) 35,073		

※자료: 국토교통부

12) 「건축법」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3) 건축사공제조합의 조합원 수는 2025년 12월 기준 12,508개사임.

(건축사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cafco.kr/>)-경영공시-조합원 현황 등)

보아, 건설기술인단체¹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복지·후생, 교육·기술인증·경력개발 등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관련 현장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4항¹⁵⁾은 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재원을 각 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5) 개정안

제70조의2(건설기술인단체의 공제사업)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¹⁶⁾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을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인 단체의 공제사업에 대한 출연금 외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둘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제사업의 종류와 재원 등을 규정하는 외에, 공제사업 관련 예산과 결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⁷⁾¹⁸⁾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9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사 및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통해 공제사업의 재무 건전성,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같이 건설기술인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제사업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관련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만 재정지원은 출연금으로 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제출 등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2. 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참
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종류 및 직무 등분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배관		배관	배관
				*지게차	지게차운전
				*굴삭기	굴착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로더	로더운전
				*롤러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	*쇄석기운전
				*준설선	*준설선운전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기계가공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연삭
			일반기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기계분야)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메카트로닉스		

종류 및 직무 등분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금형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금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전기· 전자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자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토목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전기응용				
	농어업토목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도화		*도화	도화
	상하수도				
				*석공	석공
	수자원개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질및지반				

종류 및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철도		응용지질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량			측량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공사진
	항만및해안				
					거푸집
				방수	방수
				<삭제>	석공예
				*포장	*포장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건축	건축구조				거푸집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비계
				*석공	석공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온수온돌
				*유리시공	유리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종류 및 직무 등분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적
				*철근	철근
					타일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목재창호	
		*목공예		*목공예	목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건축사				
광업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화약류 관리	화약류관리	시추
					화약취급
도시· 교통	교통		교통	교통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원예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안전 관리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 야)	소방설비(기계분 야)	
			소방설비(전기분 야)	소방설비(전기분 야)	
	전기안전				
	화공안전				
			방재		

종류 및 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축로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산업안전지도사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건설 지원				해양조사	
			해양환경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잠수	잠수	잠수	잠수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화공		화공	*화공	
			화학분석		화학분석
	섬유		섬유	섬유	
			전자계산기조직응 용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 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종류 및 직무 등분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주- 비고 부분 생략